(건축-002) 학원건물 해체공사현장 붕괴사고

공사명	○○○-○○ 철거공사			
사고일시	2017년 4월 22일(토) 9:57분경		기상상태	맑음
소재지	서울시 강남구	사고 종류	무너짐(붕괴·도괴)	
구조물 손상	슬래브	인적피해	사망 1명	
장비 손실	백호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),	해당없음(〇)

가. 사고개요

1) 공사개요

용도 : 교육연구시설연면적 : 2.600㎡

규모: 지하 3층/지상 8층 공사기간: 착공 후 20일

2) 사고경위

○ 업무시설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(지상5층, 지하3층)의 1층 바닥슬래브에서 백호우(버켓 0.8㎡)로 1층~3층 벽체 및 슬래브 해체작업을 실시하던 중 1층 바닥슬래브 붕괴로 백호우(운전자 포함)와 인근에서 살수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지하2층~3층으로 추락 및 매몰된 사고 (운전자 자력 탈출)

3) 사고원인

- 해체 대상건물 1층 바닥에 적재된 해체 잔재물 및 중장비(장비중량 20톤)의 하중을 바닥 슬래브 등 하부구조물이 견디지 못하여 붕괴된 것으로 추정
- 5층 건축물의 해체작업 잔재물 미반출
- 붕괴구간 하부 슬래브의 잭서포트 미설치 등 구조보강 미흡(추정)
 - 건축물 철거신고 시 해체잔재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, 잭서포트 보강 등 공사현장의 안전계획 누락
- 시공사(철거업체)의 착공 전 임의 시공
- 철거신고(2017년 4월 7일)시 제출된 철거계획(착공 후 20일 이내 철거)과 달리 해당 건축물의 착공신고 이전에 임의로 철거 시작
- 건설사업관리자의 지도, 감독 없이 공사현장 안전계획 미이행

나. 재발방지대책

○ 해체공사 착수 전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구조물 해체공사 전에 설계도면, 구조 계산서, 시방서, 공사비 내역서,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·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확인한 후 건물의 규모, 구조, 특징 등을 고려한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이 적정하게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사고 사진 붕괴당시 철거현황



사고 사진 해체 잔재물 적치 및 인명구조 현황

